

과일 및 채소 소매상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는 식품이 재배, 생산, 포장된 국가 또는 국가들을 알려줍니다. 레스토랑, 매점, 위탁 급식 업체 또는 직영 급식 기관, 교도소,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양로원, 급성질환 전문병원)에서 바로 소비되기 위해 판매되는 음식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원산지 표기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규정(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이하 '규정')의 제 1.2.11조항에 의거하여 규제를 받습니다. 과일과 채소 원산지 표기 요건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포장 및 비포장 식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과일 및 채소'에는 견과류, 향신료, 허브, 버섯류, 콩류, 씨앗류가 포함됩니다.

소매상점의 과일 및 채소 표기 요건

신선한 과일과 채소

소매상점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된 비포장 및 포장된 신선한 전체 또는 절단 과일 및 채소는 식품 진열에 있어 반드시 원산지 국가나 해당 국가들을 명시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소매상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과일이나 채소의 각 특정 유형의 원산지를 명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그라니 스미스 사과 - '호주산', 후지사과 - '중국산'과 같이 표기합니다.

가공 과일 및 채소

저장, 피클, 조리, 냉동 또는 건조된 과일과 채소들로 포장되지 않고 다른 음식들과 섞이지 않은 것들은 식품 진열에 있어 원산지 국가나 해당 국가들을 명시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소매상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과일이나 채소의 각 특정 유형의 원산지를 명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비포장 건조 살구 - '터키산', 비포장 대추야자 - '이란산'과 같이 표기합니다.

혼합 과일 또는 채소의 원산지 표기

혼합 과일 또는 채소의 원산지 표기의 경우 진열된 제품에 관한 라벨에 식품이 생산된 국가가 명시되어 있거나 제품 품질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품 품질 설명은 제품에 따라 '국내 및 수입 식품 혼합' 이나 '수입 식품 혼합' 중 어느 쪽인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산지국이 여럿인 혼합 과일이나 채소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호주산과 미국산이 함께 혼합되어 담긴 레몬을 진열한 경우 '호주산과 미국산

혼합'이나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이라 적힌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라벨의 크기와 가독성

문구는 반드시 보통의 소비자들이 읽기 쉬우며 눈에 띄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비포장 식품 진열과 관련된 라벨은 그 활자크기가 최소 9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식품이 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냉동 진열대에 있을 경우 활자크기는 최소 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별 스티커로 표시된 과일 및 채소

일부 과일과 채소에는 이미 식품의 원산지가 나와있는 개별 스티커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들은 본 조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과, 오렌지, 레몬과 같은 과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스티커는 단순히 브랜드명만 적혀있고 식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열에 있어 적절한 원산지 표기가 필요합니다. 추가 원산지 정보는 반드시 개별 스티커에 적힌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원산지 정보 찾기

보통 소매상들은 송장, 상자 또는 제품이 담긴 포장에서 원산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반드시 공급업체에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공급업체들은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벨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 또는 문구

식품 원산지를 설명하는 단어와 문구 역시 호주 소비자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표준 규정(Food Standards Code) 요건은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서 시행하는 2010년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과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호주 소비자법은 '~의 제품', '~산', 또는 제품, 원료, 성분 등이 특정한 국가에서

'재배'되었음을 명시하기 위해 사업체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상들은 ACCC 웹사이트 (www.accc.com.au)에서 호주 소비자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오인될 수 있는 설명

NSW 주에서 고객이 식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속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식품을 표기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당국에서는 식품에 대해 오인을 유도하거나 거짓된 행위나 허위 설명을 하는 것을 심각한 범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 실제로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만으로 구성되었는데도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이라 주장하거나, 고객이 식품의 진짜 원산지를 잘못 인식하거나 속을 만한 로고, 사진 또는 지도를 사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 또는 오인될 수 있는 만한 표시는 2010년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단속됩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 위반은 현장 벌금 최소 \$440에서 최대 \$880에 처해지며, 허위 정보나 오인될 수 있는 정보 명시는 최소 \$770에서 최대 \$1540에 처해집니다. 2003년 식품법에 의거하여, 심각한 위반 사항이 법정에 기소되었을 때 개인의 경우 최대 \$55,000까지, 기업의 경우 \$275,000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NSW 식품 당국

NSW 식품 당국(NSW Food Authority)은 NSW 주 식품의 안전과 정확한 표기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입니다.

NSW 식품 당국은 소비자, 기업 그리고 기타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식품의 안전한 생산, 보관, 배송, 홍보 및 준비 관련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식중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부 정보

표기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안내문을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www.foodauthority.nsw.gov.au/industry/food-business-issues/labelling/ 웹사이트 방문
- 1300 552 406 번에 문의 전화
-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표준청(FSANZ) 웹사이트 방문: www.foodstandards.gov.au

주의

본 정보는 일반적인 요약 정보로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식품 사업체들은 식품표준규정(Food Standards Code)과 2003년 식품법(NSW)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